



환경관리질의응답

악취신고대상여부

Q

당사는 젤라틴 및 접착제 제조 회사입니다. 합성공정에서 탈수액을 폐수저장시설($19.7m^3$)에 저장하여 전량 위탁처리합니다. 폐수 저장시설에 악취가 발생하여 흡착탑을 설치($60m^3/min$)을 설치 할려고 합니다. 폐수 저장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악취배출시설은 개별공정별로 구분하지 않고 원료의 투입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체공정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합니다.

폐수저장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 포함)에 해당되며,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이라면 「악취방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저유황유외 연료 사용 승인 후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무

Q

당사는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한 현행 중유(0.3% 이하) 사용지역의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유황유외 연료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중유(1.0% 이하)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방지시설의 설치 및 적정가동으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농도 등은 배출허용기준이내로 항상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에 기 승인을 받은 배출시설에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고온열분해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0.5% 이하)를 일부 혼합해서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면제사항 중(1항 4호)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토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한 신고 절차 등을 받아야 하는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중유(1.0% 이하)와 정제연료유(0.5% 이하)를 혼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연료가 변경됨으로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 명서에 적힌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오염물질 배출량 변경, 종 변경 등)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신고 하여 사용이 가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허용보관량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Q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당초에 허가당시의 허용보관량보다 초과반입되었으며 변경허가도 득하지 않았을 경우의 행정처분이 궁금합니다.

건폐법 제13조 제2항 규정 위반시에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1월 건폐법 제22조 규정 위반은 고발 및 영업정지 1월인데 영업정지를 동일한 기간에 1개월 받는지 아니면 각각의 합인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각각의 합인 4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1일처리능력 변경없이 단순히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 업무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여부

Q

당사는 대기1종, 수질1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당사는 환경 관련법에 따라 종별에 따른 적법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질의 1) 환경기술인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환경기술인이 아닌 다른 같은 회사 직원,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환경기술인은 상근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대직(4조 3교대)도 상근으로 봅니까?

질의 3) 대기환경기술인이 고압가스법의 책임자로 겸임할 수 있나요?

A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수행을 위한 환경기술인은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자체 규정 등에 따라 법적으로 선임된 환경기술인의 책임 하에 같은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임되는 환경기술인은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면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대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선임된 환경기술인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업장내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기술인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대기배출시설

Q

당사는 사무용 철재가구 생산업체입니다.

공정설명 : 공정중에 도장시설에서 탈지 – 수세 – 수세 – 제1건조로(79.6) – 분체도장 – 제2건조로(103.2)
– 조립.

제1건조로는 순수수세물기를 말리고 난 후 분체도장 합니다. 후 제2건조로는 도장 후 표면에 완전부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서는 제1건조로, 제2건조로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악취만 발생된다 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득했습니다.(대기배출시설면제)

그러나 다른 관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배출시설로 보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건조로는 순수물이며 오염물질이 전혀없고 물기만 제거합니다. 제2건조로는 표면에 분체를 완전부착을 위해 건조하기때문에 오염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끝으로 건조로의 연료사용은 전기사용합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동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2)에 따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 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이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의 영업구역 제한

Q

산업단지내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중에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6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내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처리업에 한에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허가기관에서 영업구역의 제한 조건을 허가조건의 사항으로 붙일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등을 개발 · 설치 ·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Q

이번 공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법중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폐수의 경우 12개월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1. 소각로 공정중 발생되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리사이클링 시켜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이옥신 분석을 해야하는지?

2.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 다이옥신 분석을 해야하는지?

3.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다이옥신 분석을 해야하는지?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만 다이옥신을 분석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제4호 나목의 폐수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뜻합니다.

소각로 공정중 발생하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재순환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이옥신 측정대상이 아니며, 위탁처리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할 경우에는 다이옥신 측정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해당 여부

Q

A공장(석유화학공장)에서는 벤젠/톨루엔 혼합물질 중 벤젠을 추출하기 위하여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공장에서 사용중인 솔벤트는 재생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을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솔벤트의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가공업체에 의뢰하여 솔벤트 재생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솔벤트 재생용역 계약체결시 임가공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재생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위탁처리 하기로하고 A공장에서는 임가공업체에 용역비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 A공장의 생산공정에 계속 필요한 솔벤트의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가공을 의뢰한 경우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솔벤트 임가공 용역을 폐기물재활용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야되는지, 아니면 폐기물재활용처리업이 업체에 위탁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솔벤트를 외주 업체에 정제 등 임가공하여 반입사용할 경우 외부로 반출되는 솔벤트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외주 임가공업체는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